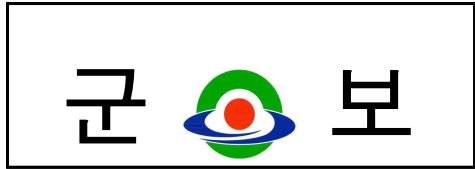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35호 2024. 6. 3.(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려

-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621호)
-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22호)
-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623호)
-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24호)
-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2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21호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군수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

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표창)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창업공간 및 재정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입주 대상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

라.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한 표창(안 제 14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22호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행복기숙사(연합)”란 한국사학재단이 설립한 행복기숙사 중 예천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행복기숙사를 말한다.
- “입사생”이란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

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행복기숙사(연합)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선발 인원 및 기준
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입사생 자격)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권역별 지역(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

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원)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의 행복기숙사(연합)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천군수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
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가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행복기숙사(연합) 명칭 및 위치(제2조의2 관련)

권역	지역	기숙사명	위치(주소)
수도권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73
		홍제동 행복기숙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
		개봉동 청년주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7
		독산동 청년주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1
충청권	충남	천안 행복기숙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경상권	대구	대구 행복기숙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길 25
	부산	부경대 행복기숙사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제정이유

-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면학 편의를 제공하여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행복기숙사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다. 입사생 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청 기간 및 방법, 선발 인원 및 기준 등

라. 입사생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입사생 자격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권역별 지역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입사생 자격 제한 :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행복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23호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4.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7.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8.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군수는 고용 촉진·안정·유지와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장려(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 등 고용 촉진 및 유지비
2. 훈련장려금
3. 정착주거비
4.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후생 복지비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을 위한 사업
2.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운영과 고용 촉진·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상북도(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을 선정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알선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취업·창업 교육 및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3.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4. 제6조 및 제7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추진 또는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사항 규정(안 제5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시행

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범위 규정(안 제6조)

-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 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사항 규정(안 제7조)

- 지원 범위 :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
- 지원 내용 : 고용장려(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 등 고용 촉진 및 유지비, 훈련장려금, 정착주거비,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후생 복지비 등

라. 행정·재정적 지원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8조, 안 제10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방법 및 절차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업무 위탁

마. 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항 규정(안 제13조)

- 취업 상담·알선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취업·창업 교육 및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의 업무 수행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24호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예천군민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
와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
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 학교, 가정 및 군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 내용)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천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모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 민간 부모교육 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

③ 위원장은 주민행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 보육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이수자 관리) 군수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수료자에게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부모교육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부모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 대상 규정(안 제4조)

- 예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라.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부모교육 종합계획 :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 사항 등 포함

- 부모교육 내용 :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형성에 관한 교육 등

마.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바. 강사 활용 등의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

사. 부모교육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3조)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아.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약 체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25호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2에 따라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고 남부 분점은 풍양면 삼강로 451-1에 두며 필요 시 추가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운송서비스”(이하 “운송서비스”라 한다)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운송을 직접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농기계 운송서비스 수수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기능)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운전 조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및 운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
2. 2.5톤 이상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⑥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시 농업인 안전공제에 반드시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군 관내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장기임대) ① 사업자는 발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동의

하며, 구입 농기계는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산정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기준에 의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기계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송서비스 대상) ① 운송서비스 대상은 예천군민 중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농업인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서비스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업인(75세 이상)이며 운반 차량 미소지자
2. 귀농·귀촌 농업인 중 운반 차량 미소지자
3. 여성농업인이며 운반 차량 미소지자

제11조(운송서비스 기준) ① 운송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횟수: 농가당 연 5회 이하
2. 농기계 인계인수 장소: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3. 농기계 운송기종: 운송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기계
4. 농기계 운송순서: 운송서비스 신청 접수순

② 농기계 입·출고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고시간: 사용일 전날 오후 4시 이후
2. 입고시간: 사용일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기계 사용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송 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제12조(운송서비스 신청) ①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송서비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대 가능한 농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운송서비스 신청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운송료)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비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제12조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받은 사용자는 운송료를 임차한 농기계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운송서비스 위탁업체에 지불하여야 하고, 센터에서 직접 운송할 경우 출고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⑤ 운송료의 농가 부담 정액분 이외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 자하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임대료 면제

③ 임대료를 면제 받은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면제 사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농작업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제16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타인 명의도용, 감면 대상자 명의도용 등)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2. 세척불량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적받은 경우

가. 1회 : 사용정지 3개월

나. 2회 : 사용정지 6개월

다. 3회 이상 : 사용정지 1년

3. 운송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현장 납부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용권을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5. 운송서비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서비스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
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운송서비스를 통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세척하여 하차한
현장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
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20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업무 담당 과장
2. 농업인단체 대표 또는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신규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잦은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2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예산군 회계관리예 관한 규칙」 및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기계 내용연수(제9조제3항 관련)

농기계	내용연수
1. 경운·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별표 2]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단기임대)(제13조 관련)

(단위 : 원/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대료	비 고
100만원 미만	9,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	
5,000만원 이상	179,000	

농기계 운송료 단가표(제13조 관련)

■ 운송서비스(위탁 업체)

구 분	운송료	산출기초	비 고
예천군	80,000원 (보조 70,000원 자부담 10,000원)	정액	1회(편도) 운송료
전지역	160,000원 (보조 140,000원 자부담 20,000원)	정액	왕복 운송료

■ 운송서비스(농업기술센터 직영)

구 분	운송료	산출기초	비 고
예천군	10,000원	정액	1회(편도) 운송료
전지역	20,000원	정액	왕복 운송료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		임차자			
예천군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군 읍면 (도로명 주소)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대
부속작업기				수량	대
				수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금 원(\)				
농기계운반	위탁운반				
	출고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요금
				km	원
	입고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요금
			km	원	
농기계사용계획					
기계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도로명주소) (속칭)				
작업면적	㎡ (일 평)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 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 임차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자가 배상한다.
-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예천군수 (인)

임차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조례 제12조 관련)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	형식	사용기간	임대료(원)	작업내용	감면금액(원)	감면사유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주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예천군수 귀하

※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계 년 월 일	임 차 인			임대기계(기종 및 대수)				임대 기간	작업 내용	작업 면적 (㎡)	입 · 출고일		결 재		
		성 명	주 소	연락처	기계명	대수	부속 작업기							담당자	담당	과장
							기종명	대수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별지 제5호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대 농가 및 작목반		임대기종(대)		임 대 기 간 (일)	임작업 면 적 (㎡)	감면액 (원)	임 대 료(원)			수 납 확인자	비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농기계 임대료	운반비	계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illegible]

◇개정이유

-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문의 용어 정비

나. 타 지역 농업인이 관내 농경지 경작 시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다.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지원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제13조)